

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

#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

## 완화 기준 적용 설명서

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

# 1. 공동주택 이자지원 기준 및 필수 요건

구분		지원 기준	이자지원 기준
주거	단독주택	① :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(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)	- 4.5% :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~30% 미만  - 5.5% :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30% 이상 차상위계층, 신혼부부, 다자녀, 고령자, 국가유공자 등
		② :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(간이평가표)	
	공동주택 (단위세대)	① :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(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)	
		③ : 창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적용 ④ : ③+보일러 교체, 단열공사, LED 교체 中 다수선택 가능	

- ① (에너지 성능 프로그램)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\*으로 산출한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

\* ECO2, ECO2-OD, GR-E, EnergyStudio, EnergyPlus, IES-VE

- ③ (창호 소비효율등급) 공동주택(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)에 한하여 창호 소비효율등급\*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\*\* 적용 가능

\*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-26호(2026. 1. 23.)<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> 준용

\*\* 외주부창(2/3 이상 교체 시 적용(1㎡미만의 창호는 제외))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2등급 이상 교체했을 시 적용

- ④ (③+보일러 교체, 단열공사, LED 교체 中 다수선택 가능)

# 1. 이자지원 기준 및 필수 요건

## ①-1. 외기에 면한 창호는 필수로 모두 교체

1㎡ 미만 크기의 창호로 **선택** 교체 대상

가로(1500) X 세로(800)

가로(800) X 세로(1200)



<확장형>

1㎡ 미만 크기의 창호로 **선택** 교체 대상

가로(600) X 세로(12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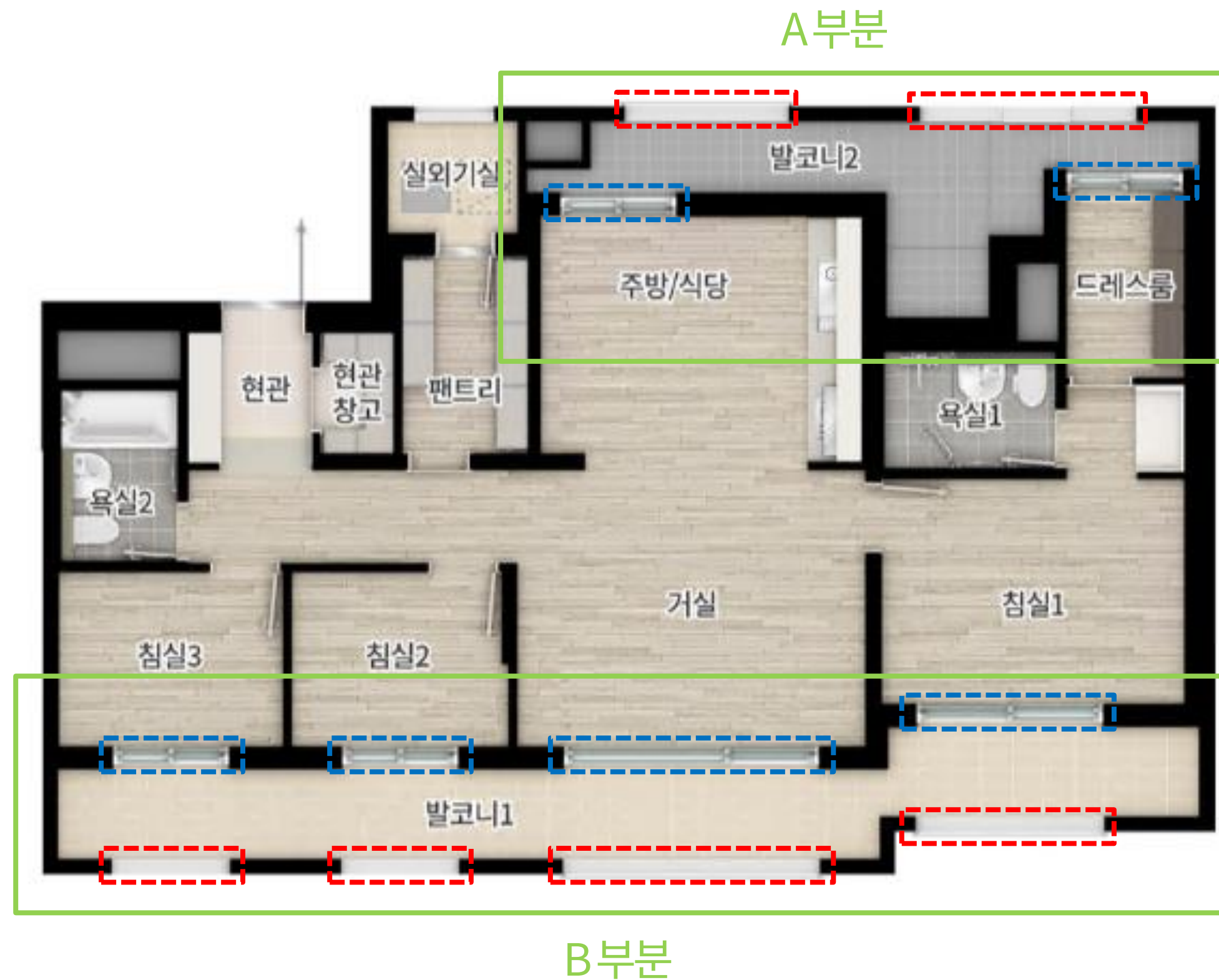


<비확장형>

# 1. 이자지원 기준 및 필수 요건

## ①-2. 외기에 면한 창호의 기준과 범위

- ‘발코니’란 건축물의 내·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
- 따라서 발코니창과 분합창 모두 외기에 면한 창으로 인정하며, 각 부위마다 발코니창 또는 분합창을 선택하여 필수로 교체
- **A타입**(발코니창) 또는 **B타입**(분합창), **혼합형**(발코니창 또는 분합창) 중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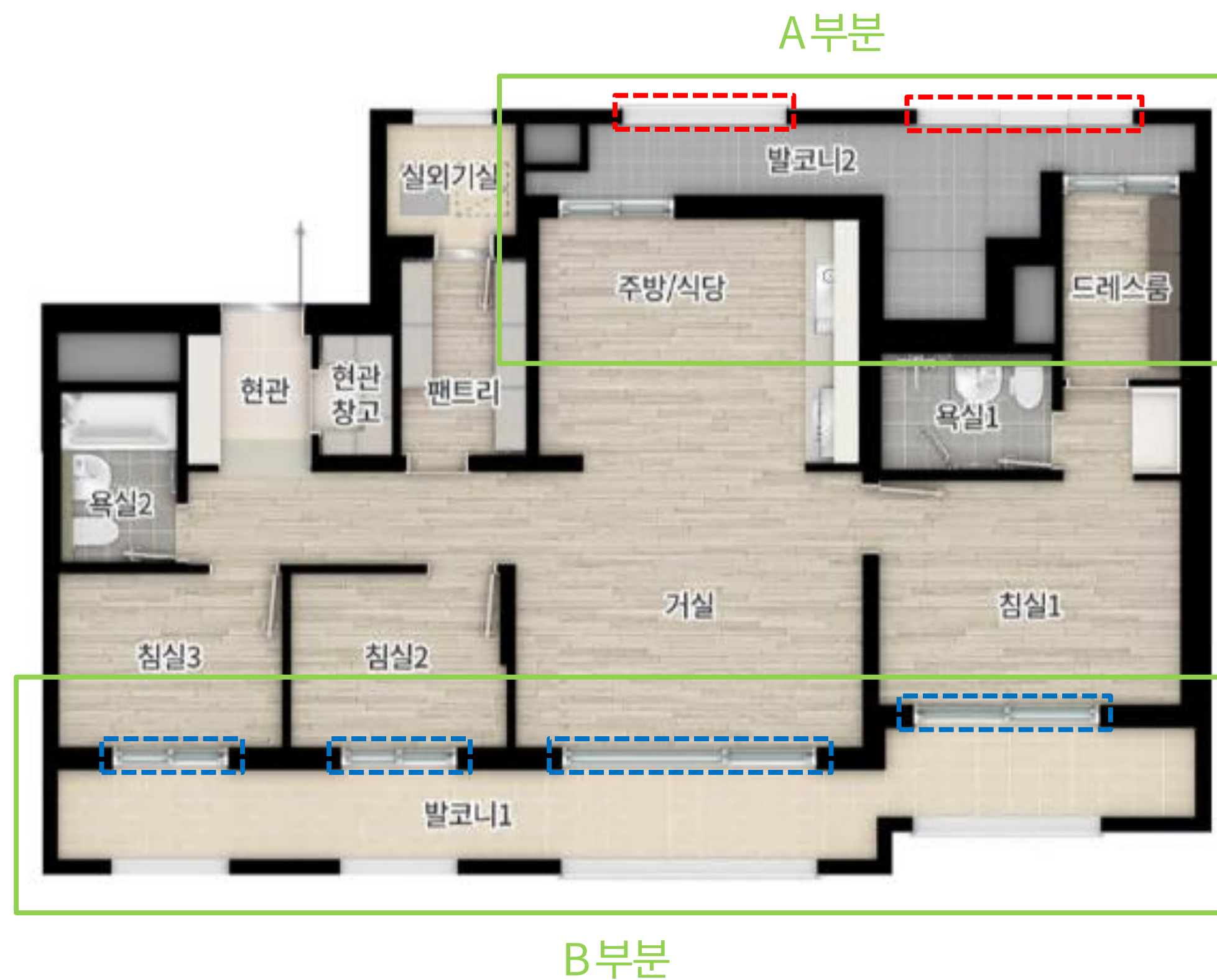


	A 부분	B 부분	타입
1	발코니창	발코니창	A타입
2	발코니창	분합창	혼합형
3	분합창	발코니창	혼합형
4	분합창	분합창	B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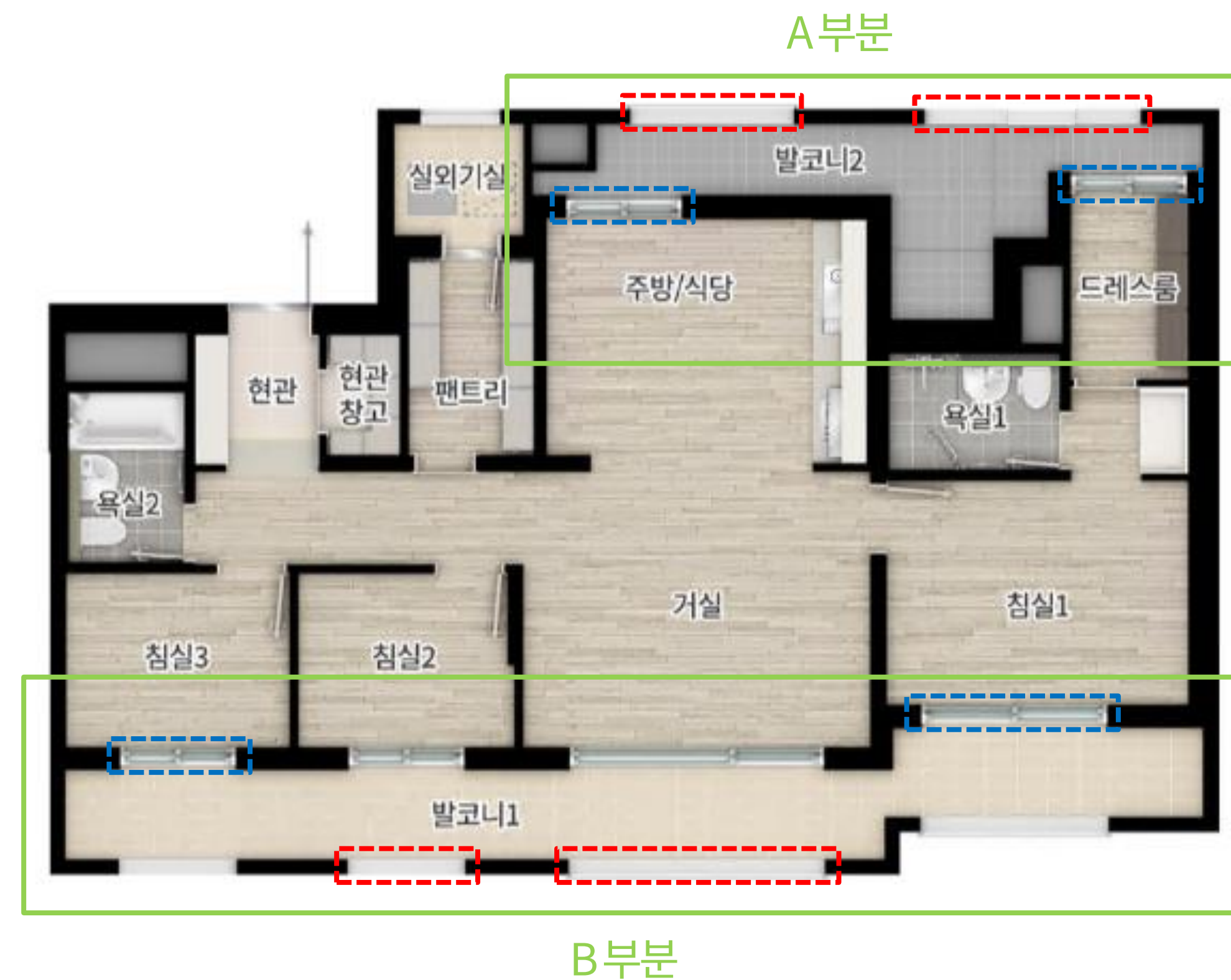
# 1. 이자지원 기준 및 필수 요건

## ①-3. 혼합형 예시

- 부위마다 발코니창 또는 분합창을 선택하여 교체 가능(단, 해당 부위에 설치된 창호는 발코니창 또는 분합창으로 통일하여 모두 교체)



A부분: 발코니창, B부분: 분합창  
→ “심사 적격”



B부분: 발코니창 또는 분합창 미통일  
→ “심사 부적격”

## 2. 성능개선 등급 책정 기준

- ②-1. 두 가지 이상의 효율등급 창호로 교체할 경우  
- 낮은 등급의 창호 값으로 성능개선 등급 책정



낮은 등급의 2등급을 기준 → 성능개선 효율등급 2등급  
→ “심사 적격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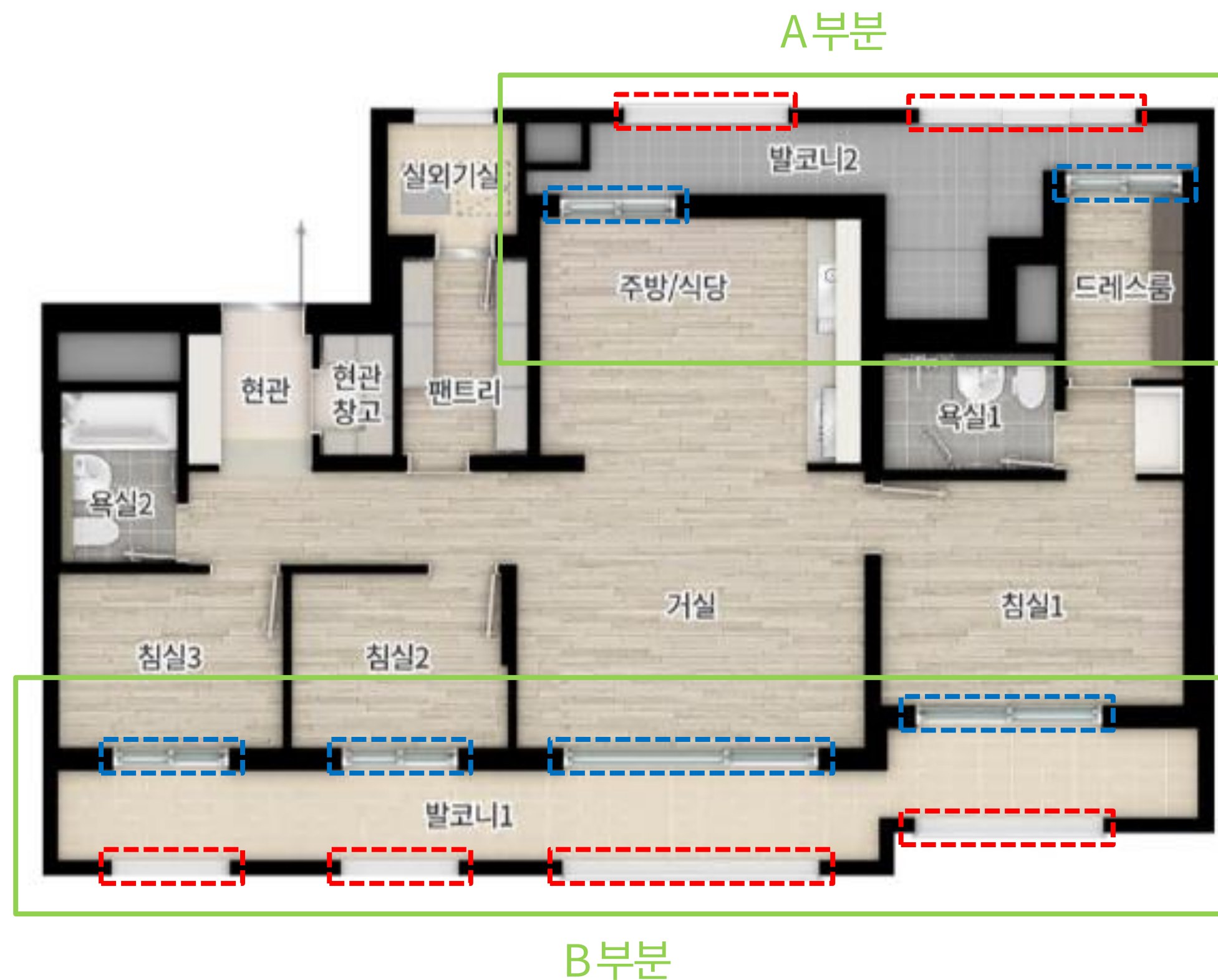


낮은 등급의 3등급을 기준 → 성능개선 효율등급 3등급  
→ “심사 부적격”

## 2. 성능개선 등급 책정 기준

### ②-2. 발코니와 분합문 부위의 창호를 이중으로 모두 교체할 경우

- 부위마다 고성능 창호에서 1등급 상향하여 책정



(예시1) **발코니창**(3등급), **분합창**(3등급)을 이중으로 교체할 경우  
고성능 창호(3등급)에서 1등급 상향하여 책정 → 효율등급 2등급

(예시2) **발코니창**(4등급), **분합창**(3등급)을 이중으로 교체할 경우  
고성능 창호(3등급)에서 1등급 상향하여 책정 → 효율등급 2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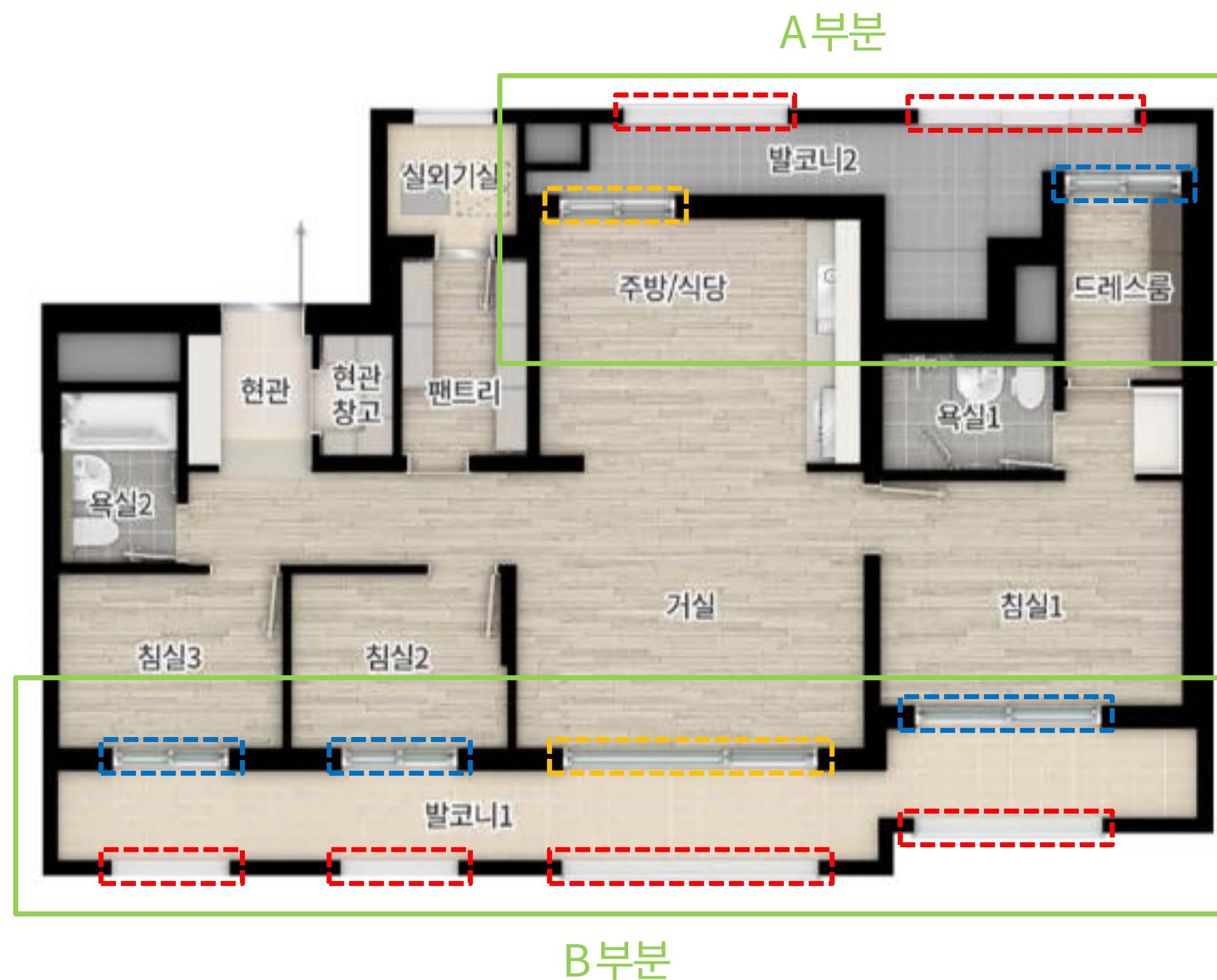
(예시3) **발코니창**(2등급), **분합창**(3등급)을 이중으로 교체할 경우  
고성능 창호(2등급)에서 1등급 상향하여 책정 → 효율등급 1등급

(예시4) **발코니창**(3등급), **분합창**(2등급)을 이중으로 교체할 경우  
고성능 창호(2등급)에서 1등급 상향하여 책정 → 효율등급 1등급

## 2. 성능개선 등급 책정 기준

### ②-3. 발코니와 분합문 부위의 창호를 일부만 이중으로 교체할 경우

- 해당 부위만 고성능 창호에서 1등급 상향하여 책정



(예시1) **발코니창**(3등급), **분합창**(3등급), **미교체**할 경우  
고성능 창호(3등급)에서 1등급 상향 불가 → 효율등급 3등급

(예시2) **발코니창**(2등급), **분합창**(3등급), **미교체**할 경우  
고성능 창호(2등급)에서 1등급 상향 불가 → 효율등급 2등급

(예시3) **발코니창**(3등급), **분합창**(2등급), **미교체**할 경우  
발코니 창호(3등급)에서 1등급 상향 불가 → 효율등급 3등급